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및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세 관계법령의 적용 등)**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취득세

**제5조(세율)** ①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영 제22조에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1천분의 30. 다만, 영 제22조에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② 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5

나. 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0

다. 원시취득 : 1천분의 20.2

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1천분의 30

마.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 1천분의 20.2

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30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영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이륜자동차 : 1천분의 20

다. 법 제124조에서 정하는 자동차 외의 차량 :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

4. 항공기

가.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 1천분의 20

나. 그 밖의 항공기 :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 중량이 5,700킬로그램

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5. 입목 : 1천분의 20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 1천분의 2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1천분의 20

③ 제2항 제1호 각 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취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 1천분의 20.2. 다만, 영 제24조에서 정하는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선박으로서 「선박등기법」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선박 : 1천분의 20

**제6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법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 :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차량·기계장비 : 종류·연식·용도

7. 항공기 :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8. 선박 :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9. 입목 :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

10. 광업권 :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1. 어업권 :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2.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

13.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1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서 광업권 및 어업권의 경우 광구 또는 어장이 다른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때에는 과세물건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 명세서 등을 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시공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명시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영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시설의 종류·취득가액 및 설치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재산목록

5.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6. 과세표준과 그 산정근거

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경우 법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업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업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시장은 그 신고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 제3장 등록면허세

###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8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조(세율)**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소유권의 이전 등기

- 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 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 3.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가. 지상권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나. 저당권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다. 지역권 :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 라. 전세권 :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마.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 4.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나. 가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5. 그 밖의 등기 : 건당 3천원

**제10조(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9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등기·등록의 원인
3. 과세대상의 소재지
4. 토지 :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자동차·건설기계 : 종류·연식·용도
7. 선박 :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0. 과세대상의 가액

## 11. 그 밖의 참고사항

###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11조(세율)**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 18,000원 (동 지역 30,000원)
2. 제2종 : 12,000원 (동 지역 22,500원)
3. 제3종 : 8,000원 (동 지역 15,000원)
4. 제4종 : 6,000원 (동 지역 10,000원)
5. 제5종 : 3,000원 (동 지역 5,000원)

**제12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면허의 종류 및 종별
4. 비과세 신청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장 레저세

**제14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른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대

수 및 그 금액(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 제5장 담배소비세

제1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장 지방소비세

제17조(지방소비세 납입확인) ① 시장은 매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아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7장 주민세

## 제1절 균등분

**제18조(세율)** ①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3,000원

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 제2절 재산분

**제19조(세율)** ①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0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면,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1절 소득분

제21조(세율)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제2절 종업원분

제22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3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9장 재산세

제24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25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 3. 주택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4. 선박

가.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 5. 항공기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제25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6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27조(과세특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28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29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

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31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32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

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 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4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초과	24원		

##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 3. 승합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 5. 특수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0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37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 제1절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38조(과세표준과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으로 한다.

제39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부과대상 지역)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

### 제2절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41조(과세표준 및 세율)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2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0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세제곱미터당 20원

제42조(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기간 내에 제41조 각 호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구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음 해 1월 16일부터 1월31일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③ 제41조 각 호에서 정하는 과세표준이 되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분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지하수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지하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채수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43조(부과대상 지역)**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

### 제3절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44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내에 광구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44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부과대상 지역)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

### 제4절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47조(세율) ①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분의 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

②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영 제138조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③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제48조(부과·징수)**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며,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시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51조(직권등재 및 통지)** 납세의무자가 제49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부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53조(부과지역)**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지역은 시 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

## 제12장 지방교육세

**제54조(과세표준과 세율)**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제1호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 해당 취

특세율에도 불구하고 제1호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2.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3.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4.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5.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6.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7.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시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구분) 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증명 등 징수 수수료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3조(징수기준) ① 제2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계기 또는 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인영에 의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수급자가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또는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된 때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다만,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징수하는 제증명등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감면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여백 또는 이면에 별표3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4와 같이 감면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준	수수료액(원)	비 고
1. 증명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800	
나. 토지관련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칼라 발급)	필지	1,000(1,500)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필지	800	
다. 주택 관련			
1) 주택가격 확인서		800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000	
라. 공장등록 증명	통	1,000	
마. 기타 제증명			
1) 재직(퇴직,경력) 증명		500	
2) 화재증명원		800	
3) 공부에 의한 증명 또는 사실확인서	통	1,000	
2. 허가·인가·등록·신고·확인			
가. 일반행정 관련			
1)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가) 신규	건	5,000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	건	3,000	
2) 공인중개사 관련			
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개인)		20,000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법인)		30,000	
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		20,000	
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		800	
마)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800	
3)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1,000	
나. 문화·관광 분야			
1) 음악산업 관련 (노래연습장 등)			
가) 등록 또는 신고		20,000	
나)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5,000	
2) 게임산업 관련			
가)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등록		20,000	
나) 게임제공업의 등록·허가 및 신고		20,000	
다) 게임산업 관련 등록·허가·신고의 변경		5,000	

구 분	기준	수수료액(원)	비 고
3) 비디오물 관련			
가)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업의 신고		20,000	
나)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의 등록		20,000	
다) 비디오물 관련 신고·등록 사항의 변경		5,000	
4) 영화업 관련			
가) 영화업 신고		30,000	
나) 영화업 변경 신고		10,000	
다) 영화업신고증 재교부		5,000	
라) 영화상영관 등록		30,000	
마) 영화상영관 계획 등록		10,000	
5) 공연장 등록			
가) 공연장 등록		10,000	
나) 공연장 변경 등록		5,000	
6) 유원시설업 관련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00,000	
나) 종합유원시설업 변경 허가		50,000	
다)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50,000	
라) 일반유원시설업 변경 허가		25,000	
마)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25,000	
바) 기타유원시설업 변경 신고		13,000	
<b>다. 체육 분야</b>			
1)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가) 사업계획 승인		200,000	
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60,000	
다)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		130,000	
라) 골프장업 등 변경 등록		50,000	
2)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가) 사업계획 승인		100,000	
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40,000	
다)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등록		60,000	
라)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변경 등록		20,000	
3) 체육시설업 신고			
가) 체육시설업 신고		30,000	
나)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10,000	
4) 체육시설업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		10,000	
<b>라. 산업자원 분야</b>			
1) 석유판매업 관련			
가) 석유판매업 등록		30,000	
나) 석유판매업 신고		20,000	
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30,000	
라) 석유판매업 등 등록·신고의 변경		10,000	

구 분	기준	수수료액(원)	비 고
2) 승강기 보수업 관련			
가) 승강기 보수업 등록		50,000	
나) 승강기 보수업 변경 등록		20,000	
다) 등록증 재 발급		4,000	
3) 전기공사업 관련			
가) 전기공사업 등록		40,000	
나) 전기공사업 변경 등록		20,000	
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건	30,000	
라) 전기공사업의 승계 신고		30,000	
마)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5,000	
4)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 관련			
가) 종합설계업 등록	건	50,000	
나) 종합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건	45,000	
다) 전문1종 설계업 등록	건	30,000	
라) 전문1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건	25,000	
마) 전문2종 설계업 등록	건	20,000	
바) 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건	15,000	
사) 종합 감리업 등록	건	50,000	
아) 종합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건	45,000	
자) 전문 감리업 등록	건	30,000	
차) 전문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건	25,000	
카) 설계·공사감리업 변경 등록		5,000	
타)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교부		5,000	
5) 대규모 점포 관련			
가) 대규모 점포(대형점,백화점 등) 개설등록	건	30,000	
나) 대규모점포 매장 증설 등록	건	30,000	
<b>마. 보건·환경 분야</b>			
1) 의료기관 개설 관련			
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	건	100,000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	건	40,000	
다)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건	30,000	
라) 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	건	40,000	
마)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 변경 신고		20,000	
바)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증 재교부		5,000	
2) 의료기사 등 관련			
가)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20,000	
나)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20,000	
다) 안경업소 개설 등록		20,000	
라)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20,000	

구 분	기준	수수료액(원)	비 고
3) 간호조무사 관련			
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		5,000	
나)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800	
4) 공중위생영업 관련			
가) 공중위생영업 신고 및 변경 신고		5,000	
나)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신고		5,000	
다) 공중위생영업 폐업 신고		3,000	
라)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5,000	
마)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신고		8,000	
바)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5,500	
사)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증 재교부		3,000	
5) 장사시설 관련			
가) 묘지 개장 등의 신고		1,000	
나) 사설묘지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신고		3,000	
다) 장사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묘지 제외)		30,000	
6)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련			
가)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0,000	
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변경		5,000	
<b>바. 건설 교통 분야</b>			
1) 사도개설 허가 및 변경 허가		3,500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유상운송) 신고 및 변경	내	2,000	
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 허가	내	2,000	
<b>사. 농수산 분야</b>			
1) 비료 사업 관련			
가) 배료생산업 등록	건	30,000	
나) 비료 수입업 신고	건	20,000	
2) 내수면어업 관련			
가) 내수면어업 면허	건	5,000	
나) 내수면어업 허가 또는 신고	건	3,000	
다) 내수면어업 면허 등 기간 연장	건	3,000	
3) 축산 관련			
가)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 신고		1,000	
나)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 변경 신고		500	

구 분	기준	수수료액(원)	비 고
4) 어업 관련			
가) 어업면허, 어업 허가 또는 신고		4,000	
나) 어업면허 등의 변경		2,000	
다) 어획물 운반업 등록		5,000	
라)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800	
마) 어업 허가증 등 재교부		1,000	
바) 시험어업 등 승인		3,000	
사) 관리선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1,000	
아)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800	
아. 기타			
1) 위 가목 내지 사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허가·신고·등록 등의 신청		2,000	
2) 위 가목 내지 사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종 인·허가 증서의 재 교부		1,000	

※ 비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조례 개정전까지 변경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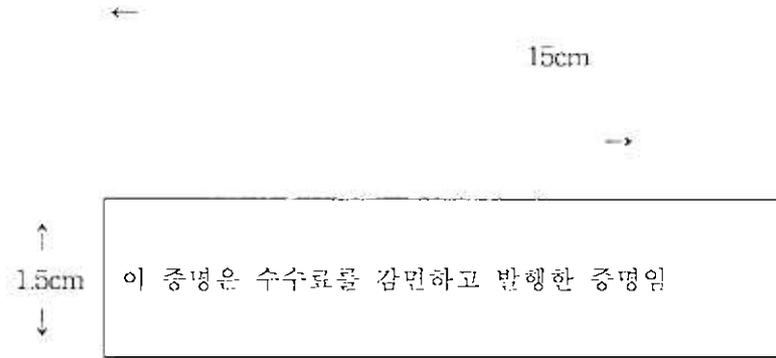
[별표2]

## 정보공개수수료

공개 대상	공개 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람</li> <li>-1건(10매 기준)1회 200원</li> <li>-1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본(1매 기준)</li> <li>-A3이상 300원</li> <li>-1매 초과마다 100원</li> <li>-B4이하 250원</li> <li>-1매 초과마다 5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람</li> <li>-1건(10매 기준)1회200원</li> <li>-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본(종이출력물)</li> <li>-1매 마다</li> <li>-A3이상 300원</li> <li>-B4이하 250원</li> <li>○복제</li> <li>-1건(10매 기준) 1회 250원</li> <li>-10매 초과시 5매마다100원</li> <li>*매체비용은 별도</li> </ul>
도면·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람</li> <li>-1매 200원</li> <li>-1매 초과마다 1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본(1매 기준)</li> <li>-A3이상 300원</li> <li>-1매 초과마다 100원</li> <li>-B4이하 250원</li> <li>-1매 초과마다 5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람</li> <li>-1매 200원</li> <li>-1매 초과마다 1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본(종이 출력물)</li> <li>-1매 마다</li> <li>-A3이상 300원</li> <li>-B4이하 250원</li> <li>○복제</li> <li>-1건(10매 기준) 1회 250원</li> <li>-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li> <li>*매체비용은 별도</li> </ul>
녹음 테이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li> <li>-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li> <li>-1개(60분기준)마다 1,500원</li> <li>-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li> <li>-1건(30분기준)마다7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제</li> <li>-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li> <li>-1개 마다 5,000원</li> <li>-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li> <li>-1건마다 3,000원</li> <li>*매체비용은 별도</li> </ul>		
녹음 테이프 (비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li> <li>-1편이 1롤 이상 이루어진 경우</li> <li>-1롤(60분기준)마다 1,500원</li> <li>-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li> <li>-1편(30분기준)마다 7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제</li> <li>-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li> <li>-1롤 마다 5,000원</li> <li>-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li> <li>-1편 마다 3,000원</li> <li>*매체비용은 별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li> <li>-1편 1,500원</li> <li>-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제</li> <li>-10분마다 3,000원</li> <li>*매체비용은 별도</li> </ul>
비디오 테이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li> <li>-1편이 1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li> <li>-1켤(60분 기준)마다 3,500원</li> <li>-여러 편이 1켤으로 이루어진 경우</li> <li>-1편(30분기준)마다 2,000원</li> </ul>			
슬라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li> <li>-1컷마다 2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제</li> <li>-1컷마다 3,000원</li> <li>*매체비용은 별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li> <li>-1컷마다 200원</li> </ul>	
마이크로 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람</li> <li>-1건(10컷 기준)1회 500원</li> <li>-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본(출력물 1매 기준)</li> <li>-A3 이상 300원</li> <li>-1매 초과마다 200원</li> <li>-B4이하 250원</li> <li>-1매 초과마다 150원</li> <li>-복제</li> <li>-1롤마다 1,000원</li> <li>*매체비용은 별도</li> </ul>		
사진 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람</li> <li>-1매 200원</li> <li>-1매 초과마다 5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화(필름)</li> <li>-1컷 500원</li> <li>-1매 초과마다</li> <li>3" × 5" 200원</li> <li>5" × 7" 300원</li> <li>8" × 10" 400원</li> <li>○복제(필름)</li> <li>-1컷 마다 6,000원</li> <li>*매체비용은 별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람</li> <li>-1매 200원</li> <li>-1매 초과마다 5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본(종이출력물)</li> <li>-1컷 250원</li> <li>-1매 초과마다</li> <li>3" × 5" 50원</li> <li>5" × 7" 100원</li> <li>8" × 10" 150원</li> <li>○복제</li> <li>-10분 마다 5,000원</li> <li>*매체비용은 별도</li> </ul>

[별표3]

## 수수료 감면사실 확인 고무인



[별표4]

##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1. 주민등록 등본	1통	300	
2. 주민등록 초본	1통	300	
3. 토지(임야) 대장	1통	300	장당 추가 100원
4. 대지권등록원부	1통	300	장당 추가 100원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500	
6. 건축물관리대장	1통	300	
7. 제적 등본	1통	300	
8. 제적 초본		200	
9. 농지원부	1통	700	

##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시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시장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형식을 빌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 날인 함으로써 성립한다.
6.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7.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8. “기금”이란 시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취급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지정 방법)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시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② 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설치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약정기간)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3. 시민 이용의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7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금고 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고, 전문가는 시의회 의원 포함 과반수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3. 시 소속 관계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 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정절차)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시보,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 기준 등을 대상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고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 약정을 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금고를 약정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금고운용 보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정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기타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정성에 급격한 변동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약정기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로 체결하는 금고의 약정기간은 제5조에 불구하고 2년 6월로 한다.

[별표 1] 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6조제1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합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3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대평가	10	
	- 국외평가기관(6점)	6	
	- 국내평가기관(4점)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3	
	- BIS 자기자본비율(7)	7	
	- 무수익 여신비율(7)	7	
	- 자기자본 이익률(6)	6	
	- 대손충당금 적립률(3)	3	
2. 시에 대한 대 출 및 예금금 리	소 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5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8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3	
4. 금고업무 수행 관리 능력	소 계	1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라. OCR센터 운영계획 및 실적	3	
5. 지역사회 기 여 및 시와 협력 사업 추진능력	소 계	10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5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별표 2】

**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6조제1항 관련)**

**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및 등급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 및 등급간 점수 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 내에 있어야 한다.

**II.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33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 기준별 등급을 비교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3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점)
- 무수익 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 이익율 (수익성, 6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 (안정성, 3점)

##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 가. 정기에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에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정기에금 금리 평균이 4%인 경우 4.4%이상)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나. 공급여금 적용금리 (5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시중정기에금 금리 평균이 1%인 경우 1.2%이상)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라.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 가.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8점)

- 시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시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나. 지방세 입금 수납처리능력 (5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다. 지방세 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

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3점)**

○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8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개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5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 (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점)**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5점)**

○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나 향후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점)**

○ 최근 3년간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영 제25조제4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

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부칠 수 있으며,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술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당 및 여비 :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2. 기술검토수당 : 1건당 200,000원

② 위원의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책임)** ①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제지 읍·면·동장에게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 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가 포함된 기업을 말한다.

② 영 제9조제4호·제23조·제29조제1항제7호·제30조·제32조제3항·제35조·제38조제1항제25호·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등에서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산정시 기산일은 기부채납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상사용을 승인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제2장 행정재산

**제17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 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가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일반재산

### 제1절 대부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 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

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양어장을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어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마을회·비영리법인 등이 임업부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사업에 필요한 경우
8. 국제기구 유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9.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사업에 필요한 경우
10. 규제제로지역 조성 사업에 필요한 경우

11.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관광사업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우

**제27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대부료 등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채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대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교육 및 연구시설 사업에 필요한 경우

나. 「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사업에 필요한 경우

다. 국제기구 유치 지원

라.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사업에 필요한 경우

마. 규제제로지역 조성 사업에 필요한 경우

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관광사업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우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 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

에는 예금 증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1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2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4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2절 매각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과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500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4.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 제3절 신탁

**제38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 제4장 공유임야 관리

**제39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립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 제5장 청사관리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의 청사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피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2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부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4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장 관사 관리

**제46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7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시장 관사
2.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48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9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 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1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 둘 때
3. 사용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기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3조(사용료의 면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4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 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인계 인수 등)** 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6조(변상 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7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장 보칙

**제58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

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1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2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3조(준용)** 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 지방청사 · 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

### 1. 시 본청

####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sup>2</sup>)

구 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 · 국장실	실 · 과장실	담당 또는 계장	직 원
시 본청	165.3	71.28	56.16	17.92	7.65	7.2

####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sup>2</sup>)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4~2.4m <sup>2</sup> /인	25~49명 2.6~1.5m <sup>2</sup> /인	50~99명 2~1.2m <sup>2</sup> /인	100~149명 1.6~1m <sup>2</sup> /인	150~199 1.2~0.9m <sup>2</sup> /인	200명이상시 면적 = 0.8m <sup>2</sup> ×사용인원
상 황 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 읍·면·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 ~ 200명	200명 이상		
		0.43m <sup>2</sup> / 인	0.40m <sup>2</sup> / 인	0.33m <sup>2</sup> / 인		
	엘리베이터	(12.87~19.6m <sup>2</sup> ) × 대수				
식 당	1.63m <sup>2</sup>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m <sup>2</sup>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m <sup>2</sup> ×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m <sup>2</sup> ~0.2m <sup>2</sup> ×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 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m <sup>2</sup> / 인	11.52m <sup>2</sup> / 인	8.64m <sup>2</sup> / 인			
자 료 실	(0.3~0.4m <sup>2</sup> ) × 공무원수					
창 고	0.72m <sup>2</sup> /인 ~ 0.85m <sup>2</sup> /인					
전 산 실	9.79m <sup>2</sup>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m <sup>2</sup> 이상					평시 증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sup>2</sup>)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m <sup>2</sup>		800m <sup>2</sup>		1,000m <sup>2</sup>	
	층장비실	6.6m <sup>2</sup>		8.4m <sup>2</sup>		10.2m <sup>2</sup>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40%]

2. 시의회 청사

구 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의 원 실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의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시의 실·국장실 면적 준용	위원회 수만큼 실수 확보	
회 의 실	본회의장	의원 수 × 5m <sup>2</sup> + 방청석 수×1.5m <sup>2</sup>		
	회의실	의원 수 × 3.3m <sup>2</sup> + 답변석 면적	대 / 중 / 소	
	위원회실	의원 수 × 8.2m <sup>2</sup>	상임위원회 수만큼	
부 속 공 간	사무국장실	시의 실·국장실 면적 준용		
	사 무 실	직원 수×7.2m <sup>2</sup>		
	자료실 및 도서실	일반적 자료실 면적기준에 의거 198-297m <sup>2</sup>		
	대기실	의 원	의원 수×2.5m <sup>2</sup>	
		기 자	50m <sup>2</sup>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1.8m <sup>2</sup>	
	휴게실	의 원	의원 수×2m <sup>2</sup>	
		직 원	직원 수×2m <sup>2</sup>	
		방청객	방청객 수×2m <sup>2</sup>	방청객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당 직 실	2인실기준 15m <sup>2</sup>	
화 장 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			
기 타	예비실(50m <sup>2</sup> )을 1개소 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